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2026년 세제개편안 - 농업 부문 주요 개정사항 I '26-8-3 재정경제부

[상시화]

- 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)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를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하고, 조합원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분리과세하는 제도
 - <개정안>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속지원을 위해 제도 적용기한('26.12.31.)을 삭제하여 상시화
- 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)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
 - <개정안>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('28.12.31.)을 삭제하여 상시화
- (농어업 대행용역·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) 영농조합법인 등이 공급하는 경영·작업 대행용역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
 - <개정안> 농어민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(대행용역 '26.12.31., 직수입 기자재 '28.12.31.)을 삭제하여 상시화

[연장]

- (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)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“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”*를 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
 - * 65~84세로서 10년 이상 농업경영한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논·밭·과수원
 - <개정안> 은퇴 고령농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 1년 연장('26.12.31. → '27.12.31.)
- (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)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
 - <개정안> 농어민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('26.12.31. → '29.12.31.)

[재설계]

- (전답 임대소득 비과세) 논·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
 - <개정안> 적법한 농지 이용 유도를 위해 농지법 위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('27.1.1. 이후 소득부터 적용)
- (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경영위기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 다시 사들일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제도
 - <개정안> 지원 필요성 감소 등으로 적용기한 신설('29.12.31.)

[재정전환]

- (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) 농어민이 가입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
 - <개정안> 적용기한을 '28.12.31.까지 가입분에서 '26.12.31.까지 가입분으로 단축, 재정지출 방식으로 제도 전환

[종료]

- (농·어·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) 농·수협 조합원의 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*를 면제하는 제도
 - * 재산권 창설·이전·변경 등을 증명하는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
 - <개정안> 제도 실효성이 저조하여 '26.12.31.을 끝으로 적용기한 종료

[향후 일정]

-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(8.4. ~ 8.20.)와 차관회의(8.27.), 국무회의(9.1.)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예정
- ❖ 세제개편 시 예상되는 농가 실익 영향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.